

2015년 아동학대예방 포럼

## 한국의 아동정책, 아동의 미래를 꿈꾸다

- 일 시 2015년 10월 14일(수) 14:00-17:30
- 장 소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관 1층 국제회의장
- 일 정

접수	13:30-14:00	[접 수]
----	-------------	-------

개회 · 기조 강연	사회: 김경희 팀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정책연구팀)	
	14:00-14:30	[개 회]
	14:30-15:10	[기조강연] 훈육의 일반적인 오해와 아동권리에 기반한 훈육방법 오은영 원장(오은영의원 소아청소년클리닉)
	15:10-15:20	[휴 식]

주제 발표	15:20-16:00	[주제발표]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1주년 성과 및 개선과제 장화정 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6:00-16:30	[사례발표] 유관기관협력을 통한 피해아동 보호 및 가족기능 회복 사례

토론	좌장: 이재연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16:30-17:10	[지정토론] 1) 한명애 관장(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2) 이용욱 경정(경찰청 여성청소년과) 3) 안성희 검사(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여성아동조사부) 4) 여현주 판사(서울가정법원) 5) 강동욱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17:10-17: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30	[폐 회]



## 환영사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풍요로운 결실과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만추의 계절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한국의 아동정책, 아동의 미래를 꿈꾸다”

를 주제로 ‘2015년 아동학대예방 포럼’을 열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심에도 관심을 갖고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오늘 아동학대예방 포럼을 준비하느라 애써 오신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님, 강신명 경찰청장님,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님을 비롯한 행사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조강연과 주제발표를 하여주실 분들과 사례발표 및 토론을 하여주실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19대 국회 등원 이후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의정활동을 집중해 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투표권도 없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대변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고자 애써왔습니다.

0~5세 무상보육 및 초중등생 친환경 무상급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동학대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범정부차원의 방과후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방과후아동청소년돌봄법안」을 대표발의하며, 금년 5월부터 시행되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법」 제정을 주도하여 학교밖 청소년이 대안적 학습을 할 수 있고, 취업과 자립을 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애써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보육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충격적인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하여 아동권리 및 아동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실에 입각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이서현 보고서’를 작성,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여 지난해 정부의 2.28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아동학대예방 포럼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제정법률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특례법’과 개정 「아동복지법」의 시행 1년을 평가하고, 제가 주도하여 입법하여 지난달부터 시행된 아동의 보호자로 하여금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금지하는 개정 「아동복지법」과 관련 대안적 훈육방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아동보호 시스템이 부실하여 아동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로 사망한 아동수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동안 무려 1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3년 22명에 이어 지난해에도 17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였는데,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야만적인 행태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아동을 때리는 것이 학대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잔혹한 인권유린이자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 활성화, 피해아동 보호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학대처벌특별법」이 제정되고,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학대관련 선진적인 법적 기틀이 마련되고,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신고 종합대책이 추진되며,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2015년 새해부터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피해아동 보호업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되었지만 관련 예산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일이 절실하며, 태부족한 지역아동보호전

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고, 아동학대 대응 전문인력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 전문인역의 경우 호봉제 인정,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여타 사회복지시설보다 처우가 열악하여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이직률이 심각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절실합니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의 강화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시행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3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학대 비율도 14%까지 증가하다 지난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10%를 웃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학대 방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체벌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체벌을 대체할 대안적 훈육방법의 개발과 보급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양육방법 및 기술부족이 많으므로, 가족이 아동보호의 보루라는 점에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고, 아동권리교육도 강화하여 아동기부터 학대받지 않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폭력이 대물림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충격적인 세월호 참사 이후 돈보다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동학대예방 포럼에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만큼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아  
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 입법 및 정책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정부에서도 국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뜻 깊은 아동학대예방 포럼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  
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남인순





## 인 사 말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입니다.

오늘 개정 「아동복지법」 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해 [한국의 아동정책, 아동의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아동학대예방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2015 아동학대예방 포럼’ 을 함께 마련해 주시고 평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인순 의원님과 아동학대 범죄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경찰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시고 바쁘신 와중에 이번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국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는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해 제정·개정된 두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 해이며,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증설과 인력 확충도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년간 정부는 제정·개정된 두 법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조기 발견, 신속 대응,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 모든 단계에

서 국가 개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아동학대 예방에 분투하신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대응 현장의 직원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동학대 전문가 분들과 현장 관계자가 함께 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개정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주년을 되돌아보고 아동학대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들을 도출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학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포럼을 통해 제안된 여러 의견들을 심사숙고하여 필요한 부분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내·외빈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 인 사 말



반갑습니다. 경찰청장 강신명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지켜 주기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남인순 의원실,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국의 아동정책, 아동의 미래를 꿈꾸다’ 라는 주제로 ‘아동학대예방 포럼’ 을 공동주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행사를 준비해 주신 남인순 의원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0일 후면 울주에서 아동학대로 안타깝게 사망한 ‘서현이 사건’ 이 발생한지 2년이 됩니다.

국가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정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현장에서 시행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을 한 자리에 모시고, 지난 1년의 성과와 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찰은 '14년 4월부터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모든 경찰관이 “아동학대는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라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식전환 교육을 진행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존 1391 등 아동학대 신고번호를 인지도 높은 긴급전화 112로 통합하였으며, 올 초에는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아동학대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전국 모든 경찰서에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설치하고, 아동조사면접기법 등 교육을 진행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와 훈육을 가르는 명확한 잣대가 없는 현실에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현장의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한정된 인력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아동학대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오늘 포럼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고,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소중한 밑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포럼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  
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경찰청장 강 신 명

##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의원입니다.

2015년 아동학대예방 포럼 ‘한국의 아동정책, 아동의 미래를 꿈꾸다’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뜻깊은 포럼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님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강신명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우리 아동의 안전과 학대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님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의 아이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에 달려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인 우리 아동들이 어떠한 불안과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자라야 국가가 건강하고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이 웃으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아이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4년 신고 된 아동학대 건수는 1만 7766건에 이르러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아동학대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우리 아동의 수가 작년 만해도 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나라에 아동인권보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도 체계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동학대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및 치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포럼은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 노력이 더욱 더 빛을 발해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오신 전문가 여러분들이 함께 한 이번 포럼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토대가 조성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아동학대예방 포럼 ‘한국의 아동정책, 아동의 미래를 꿈꾸다’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한민국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내외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 김 춘 진

## 축 사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안홍준입니다.

먼저 오늘 [한국의 아동정책, 아동의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 ‘2015 아동학대예방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귀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남인순 의원님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강신명 경찰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온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의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제가 대표발의한 제정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해 9월 29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이는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국가적 개입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아동학대근절특위 과정에서 논의된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변보호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고소 및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오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2015 아동학대예방 포럼’을 통해 한국의 아동정책을 되짚어 보고 나아가 아동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귀중한 초석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무부, 경찰청 등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한 이 자리가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과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는 단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신고 증가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상담원 처우개선과 같은 예산확보와 정책개선의 현안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현안뿐만 아니라 오늘 포럼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고견들을 귀담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한국의 아동정책, 아동의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열리는 ‘2015 아동학대예방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현장 관계자 여러분과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안 홍 준

## 축 사



반갑습니다. 굿네이버스 부회장 김인희입니다.

개정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실시되는 ‘2015 아동학대예방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오늘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신 남인순 의원님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태동기부터 피해아동의 보호와 아동권리의 신장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에서부터 현재 26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발전에 함께 기여하며 달려왔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자로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기관과의 아동학대예방 업무간 협업이 강조되어, 아동보호체계가 한걸음 더 진전되며 새롭게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의 아동정책, 아동의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2015 아동학대예방 포럼’을 통해 훈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피해아동 및 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회복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굿네이버스는 학대피해아동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보살피주고 지원하는 든든한 NGO로서 아동보호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선한 영향력을 키워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정부부처, NGO, 협력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내·외빈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굿네이버스 부회장 김 인 희

# 목 차

기조강연	훈육의 일반적인 오해와 아동권리에 기반한 훈육방법 ..... 1 오은영 원장(오은영의원 소아청소년클리닉)
주제발표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아동복지법 시행 1주년 성과 및 개선과제 .. 9 장화정 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발표	유관기관협력을 통한 피해아동보호 및 가족기능회복 사례 ..... 41
토론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방안 ..... 43 1) 한명애 관장(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45 2) 이용욱 경정(경찰청 여성청소년과) .....49 3) 안성희 검사(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여성아동조사부) .....59 4) 여현주 판사(서울가정법원) .....63 5) 강동욱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69





## 기초강연

---

### 훈육의 일반적인 오해와 아동권리에 기반한 훈육방법

오은영 원장(오은영의원 소아청소년 클리닉)





# MEMO

# MEMO

# MEMO

# MEMO

## 주제발표

---

#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1주년 성과 및 개선과제

장화정 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1주년 성과 및 개선과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 화 정

## 1. 들어가기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시작된 2000년을 전후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단독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2010년(18대 국회)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2011년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안) 내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단독법은 무산되었다. 2013년 칠곡과 울산에서 일어난 계모에 의한 사망사건, 소금밥 사망사건, 서울 골프채 체벌 사망사건 등 연이은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국내 아동 보호체계의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미 2012년(19대 국회) 발의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있던 2개의 아동학대 관련 단독법안<sup>1)</sup>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병합되어 201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과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에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국가가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이후 현장의 변화에 대한 설문 진행 및 이를 분석하여 추후 피해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2.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1년(11개월) 성과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1년(11개월)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sup>2)</sup>의 정보를 추출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2014.9.29.~2015.8.31.)와 이와 동일하게 기간을 설정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2013.9.29.~2014.8.31.)의 신고접수 현황, 경찰 동행 현장조사 현황,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조치 현황, 서비스 제공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고,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는 통계 추출 기간 및 분석기간을 고려하여 11개월간의 성과를 본 것으로 완전한 1년이 아님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 1) 신고접수 현황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 신고접수 된 전체 사례건수는 15,329건, 시행 이후 신고접수 된 전체 사례건수는 17,156건으로 전년도 대비 1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 된 전체 사례건수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 포함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 12,806건에서 시행 이후 14,831건으로 16.0%가 증가하였다. 이와 반대로 일반상담은 2,447건에서 2,224건으로 9.1%가 감소하였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자들이 아동학대를 명확히 인지하고, 아동학대사례를 신고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표 2-1〉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아동학대의심사례			일반상담	동일신고	해외발생 사례	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 (2013.09.29.~2014.08.31.)	2,236 (14.6)	10,570 (69.0)	12,806 (83.5)	2,447 (16.0)	71 (0.5)	5 (0.0)	15,329 (100.0)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2014.09.29.~2015.08.31.)	2,104 (12.3)	12,727 (74.2)	14,831 (86.5)	2,224 (13.0)	87 (0.5)	14 (0.0)	17,156 (100.0)

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은 실시간 국가아동학대현황을 추출 할 수 있는 시스템임. 특히 본 원고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데이터 클리어링을 하여 통계를 제공해야 함으로써 부득이하게 2015.8.31.일자로 분석이 이루어져 실제로는 11개월의 성과임.



다음 <표 2-2>는 신고접수 경로유형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이전과 시행이후의 경로유형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전체 신고의 96.1%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접수되었고, 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에서 신고접수 되는 비율이 92.1%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112로 아동학대신고전화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 112로 신고 되는 비율이 전체 아동학대신고접수 건수의 44.4%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접수 되는 비율은 54.3%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학대 의심상황 내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을 진행한 후 신고를 진행하려는 신고자의 경향과 아동학대통합신고 112에 대한 인식 및 홍보 부족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보건복지콜센터 129, 119 등을 이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통한 신고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신고접수 경로유형

(단위 : 건, %)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119	129	1366	계
	일반전화 <sup>3)</sup>	인터넷	내방	소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 (2013.09.29.~2014.08.31.)	14,111 (92.1)	615 (4.0)	0 (0.0)	14,726 (96.1)	2 (0.0)	17 (0.1)	551 (3.6)	33 (0.2)	15,329 (100.0)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2014.09.29.~2015.08.31.)	8,816 (51.4)	449 (2.6)	47 (0.3)	9,312 (54.3)	7,616 (44.4)	29 (0.2)	15 (0.1)	184 (1.1)	17,156 (100.0)

## 2) 경찰 동행 현장조사 현황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조사 시 경찰 동행 업무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 11조(현장출동) 1항4)에 명시된 동행출동 조항으로 인하여 시행 이전 1,400건에 불과했던

3) 2014년 9월 28일까지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되던 1577-1391로 접수된 신고건수이고, 2014년 9월 29일 이후에는 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일반전화로 접수된 신고건수임.

4) 아동학대처벌법 제 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나 그 소속 지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경찰 동행 비율은 시행 이후 10,940건으로 약 6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와 대비했을 때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서로 통보 또는 동행하여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경찰과의 협력업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상담원 단독 또는 관계 공무원 등과 동행한 경우가 전체 현장조사 현황의 6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현장조사가 1차로 끝나지 않고, 긴급한 아동의 보호와 상담원의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상담원 단독 또는 관계 공무원 등과 동행한 현장조사가 2~3차로 이어져서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2-3〉 경찰 동행 현장조사 현황

(단위 : 건, %)

	경찰 동행	상담원 또는 관계공무원 동행	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 (2013.09.29.~2014.08.31.)	1,400 (8.1)	15,723 (91.9)	17,123 (100.0)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2014.09.29.~2015.08.31.)	10,940 (36.1)	19,360 (63.9)	30,300 (100.0)

### 3) 사례판단 결과

사례판단 결과를 살펴보면, 현장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 613건을 제외하고 아동학대의심사례 중에서 사례판단 결과의 전체적인 비율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후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아동학대사례는 8,493건에서 9,833건으로 16%가 증가하였다.

〈표 2-4〉 사례판단 결과

(단위 : 건, %)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조사 진행 중 사례	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 (2013.09.29.~2014.08.31.)	8,493(66.3)	1,600(12.5)	2,713(21.2)	0(0.0)	12,806(100.0)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2014.09.29.~2015.08.31.)	9,833(66.3)	1,576(10.6)	2,809(19.0)	613(4.1)	14,831(100.0)

#### 4)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현황<sup>5)</sup>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현황을 <표 2-5>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9,833건의 사례 중 아동학대처벌법 조치가 된 사례 건수는 1,164건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한다. 이외에 8,669건(88.0%)은 아동복지법으로 조치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조치된 사례 중 응급조치는 871건이 진행되었고, 긴급임시조치 39건, 제14조와 제15조 임시조치 579건, 임시보호명령 128건, 피해아동보호명령 100건이 결정되었다. 상세한 조치 청구 및 결정 내용은 아래에 각 조치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표 2-5>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현황

(단위: 건, %)

단계		실건수
아동학대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사례 건수	1,164(12.0)
	아동복지법 조치 사례 건수	8,669(88.0)
<b>아동학대사례</b>		<b>9,833(100.0)</b>
응급조치		871(8.6)
긴급임시조치		39(0.4)
임시조치		579(5.9)
임시보호명령		128(1.3)
피해아동보호명령		100(1.0)

5)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경찰청 통계는 미반영함.

## 가. 응급조치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원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543건,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328건으로 총 871건이다. 응급조치 내용 중 상담원이 가장 많은 조치를 취한 내용은 3호(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가 510건(77.6%)이고, 다음으로 2호(피해아동으로부터 행위자 격리) 61건(9.3%), 4호(피해아동 의료기관 인도) 56건(8.5%), 1호(학대행위 제지) 30건(4.6%)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상담원과 마찬가지로 3호(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가 258건(49.3%)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2호(피해아동으로부터 행위자 격리)와 1호(학대행위 제지 조치)가 각각 125건(23.9%), 98건(18.7%)으로 상담원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 4호(피해아동 의료기관 인도)는 42건(8.0%)이었다.

〈표 2-6〉 응급조치 현황

(단위: 건, %)

분류	실건수	조치 내용					총계 (중복집계)
		1호	2호	3호	4호		
상담원	543	30(4.6)	61(9.3)	510(77.6)	56(8.5)	657(100.0)	
경찰	328	98(18.7)	125(23.9)	258(49.3)	42(8.0)	523(100.0)	
<b>총계</b>	<b>871</b>	<b>128(10.8)</b>	<b>186(15.8)</b>	<b>768(65.1)</b>	<b>98(8.3)</b>	<b>1,180(100.0)</b>	

- 1호: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 2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3호: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4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나. 긴급입시조치

긴급입시조치의 결정건수는 총 39건으로 경찰 직권에 따라 22건,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3건,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14건이 결정되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호(100m이내 접근금지)가 29건(40.8%)로

가장 많은 분포로 결정되었으며, 1호(퇴거 등 격리)와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가 각각 21건(29.6%)으로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2-7〉 긴급임시조치 현황

(단위: 건, %)

신청자	신청 실건수	결정 실건수	취소 실건수	1호	2호 <sup>6)</sup>							3호	총계 (중복집계)
					주거	학교 학원	보호 시설	병원	기타	소계 (중복 포함)	소계 (중복 제외)		
법정대리인	3	3	1	0(0.0)	0(0.0)	0(0.0)	2(100.0)	0(0.0)	0(0.0)	2(100.0)	2(50.0)	2(50.0)	4(100.0)
아동보호전문 기관장	14	14	1	4(22.2)	3(21.4)	3(21.4)	5(35.7)	2(14.3)	1(7.1)	14(100.0)	9(50.0)	5(27.8)	18(100.0)
경찰직권	-	22	2	17(34.7)	15(51.7)	5(17.2)	7(24.1)	2(6.9)	0(0.0)	29(100.0)	18(36.7)	14(28.6)	49(100.0)
<b>총계</b>	<b>17</b>	<b>39</b>	<b>4</b>	<b>21(29.6)</b>	<b>18(40.0)</b>	<b>8(17.8)</b>	<b>14(31.1)</b>	<b>4(8.9)</b>	<b>1(2.2)</b>	<b>45(100.0)</b>	<b>29(40.8)</b>	<b>21(29.6)</b>	<b>71(100.0)</b>

·1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다. 임시조치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경찰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경찰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청구신청한 사례는 총 288건이고, 이 중 201건(69.8%)은 검사에게 임시조치가 청구 되어 절차가 진행 중이며, 87건(30.2%)은 검사에게 임시조치가 청구신청 되지 않았다. 임시조치가 청구신청 되지 않은 사유는 학대행위자의 긴급체포나 병원 입원 등으로 피해아동에게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의 처벌의사가 없거나 원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일회성 학대의 경우 및 학대행위자의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등의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경우, 학대행위의 고의성이 없고 재학대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으로 파악되었다.

6) 임시조치 2호 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로 주거·학교 및 학원·보호시설·병원·기타에 대해서 중복으로 신청 및 청구, 결정이 가능하여 2호 조치만 따로 집계하여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하였고, 1호~7호에 대한 중복 집계에서는 2호의 중복 제외한 소계를 반영하여 결정 총계의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함.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이 임시조치를 청구신청 한 경우 또는 검사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는 총 210건이고, 이 중 189건(90.0%)은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되어 절차가 진행 중이며, 21건(10.0%)은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요청 및 청구신청을 거부하였다. 임시조치 청구요청 및 청구신청을 거부한 사유는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접근성이 낮은 경우, 학대행위가 일회성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재학대 가능성이 낮은 경우, 임시조치로 인하여 가정폭력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이 거주지 노출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파악되었다.

〈표 2-8〉 임시조치 청구신청(요청) 및 청구(요청) 현황

(단위: 건, %)

절차 분류	결정 실건수	거부 실건수	총 실건수
신청(요청)	201 (69.8)	87 (30.2)	288 (100.0)
청구(요청)	189 (90.0)	21 (10.0)	210 (100.0)

임시조치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판사 직권 또는 법원으로 임시조치가 청구되어 결정된 사례는 총 579건으로 전체 95.1%에 해당하고,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사례는 30건(4.9%)이었다. 임시조치 청구가 기각된 사유는 아동학대혐의 증거 불충분의 사유가 가장 많았고, 낮은 재학대 가능성, 학대행위자의 낮은 접근가능성 등으로 파악되었다.

임시조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임시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가 458건(35.9%)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치가 이루어졌고, 보호시설 34.3%, 주거 30.5%, 학교 및 학원 29.7% 순으로 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임시조치 5호(상담 및 교육위탁)조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을 강제화하고 동

시에 학대행위 및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로 299건(23.5%)이 이루어졌다. 이는 피해아동 가정 내 재학대 예방을 위하여 앞으로 현장에서 많이 활용해야 할 조치이다. 이외에 임시조치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 265건(20.8%), 1호(퇴거 등 격리) 167건(13.1%), 6호(의료기관 위탁) 44건(3.5%), 4호(친권 제한 또는 정지) 41건(3.2%), 7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1건(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9〉 임시조치 결정 현황

(단위: 건, %)

절차 분류	결정 실건수	거부 실건수	총 실건수	세부 내용												결정 총계 (중복 집계)	
				1호	2호 <sup>7)</sup>							3호	4호	5호	6호		7호
					주거	학교 학원	보호 시설	병원	기타	소계 (중복 집계)	소계 (중복 제외)						
법원 결정	579 (95.1)	30 (4.9)	609 (100.0)	167 (13.1)	255 (30.5)	248 (29.7)	287 (34.3)	24 (2.9)	22 (2.6)	836 (100.0)	458 (35.9)	265 (20.8)	41 (3.2)	299 (23.5)	44 (3.5)	1 (0.1)	1,275 (100.0)

- 1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 3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6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서의 위탁
- 7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라. 피해아동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sup>7)</sup>이 직접 가정법원에 아동의 보호를 청구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현황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였으나 결정이 되지 않은 건수로 총 213건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158건(74.2%)으로 가장 많이 청구하였고, 변호사와 피해아동법적대리인은 각각 53건(25.0%), 2

7) 임시조치 2호 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로 주거·학교 및 학원·보호시설·병원·기타에 대해서 중복으로 신청 및 청구, 결정이 가능하여 2호 조치만 따로 집계하여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하였고, 1호~7호에 대한 중복 집계에서는 2호의 중복 제외된 소계를 반영하여 결정 총계의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함.

건(0.9%)을 청구하였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시 아동의 임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지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청구한 건수는 199건으로 전체의 93.4%에 해당하였고, 14건(6.6%)은 임시보호가 불필요하다고 청구하였다.

〈표 2-10〉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현황

(단위: 건, %)

청구인	청구 실건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시	
		임시보호 필요	임시보호 불필요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2(100.0)	2(100.0)	0(0.0)
아동보호전문기관장	158(100.0)	145(93.9)	13(6.1)
변호사	53(100.0)	52(98.1)	1(1.9)
<b>총계</b>	<b>213(100.0)</b>	<b>199(93.4)</b>	<b>14(6.6)</b>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되기 전까지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조치한 보호명령이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시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실건수 180건에서 임시보호명령은 128건인 71.1%가 결정되었고, 52건(28.9%)이 기각되었다.

〈표 2-11〉 임시보호명령 결정 현황

(단위: 건, %)

청구인	임시보호명령 결정	임시보호명령 기각	총 실건수
판사 직권	36(85.7)	6(14.3)	42(100.0)
아동보호전문기관장	79(71.8)	31(28.2)	110(100.0)
변호사	13(46.4)	15(53.6)	28(100.0)
<b>총계</b>	<b>128(71.1)</b>	<b>52(28.9)</b>	<b>180(100.0)</b>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총 107건 중 100건이 결정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청구한 52건 중에서 46건이 결정되었고, 판사 직



권으로 청구한 33건 중 32건이 결정되었으며, 변호사가 청구한 22건 중에서 22건이 결정되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4호(피해아동 보호위탁)조치가 94건(46.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호(접근 제한) 조치가 46건(22.7%), 3호(전기통신 접근 제한)조치가 34건(16.7%) 순으로 높은 결정 분포를 보였다.

〈표 2-12〉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단위: 건, %)

청구인	결정 실건수	기각 실건수	총 실건수	결정 내용									총계 (중복 집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판사 직권	32	1	33	0 (0.0)	8 (15.7)	8 (15.7)	33 (64.7)	0 (0.0)	0 (0.0)	1 (2.0)	0 (0.0)	1 (2.0)	51 (100.0)
아동보호전문 기관장	46	6	52	0 (0.0)	27 (24.5)	17 (15.5)	42 (38.2)	5 (4.5)	5 (4.5)	11 (10.0)	1 (0.9)	2 (1.8)	110 (100.0)
변호사	22	0	22	1 (2.4)	11 (26.2)	9 (21.4)	19 (45.2)	0 (0.0)	2 (4.8)	0 (0.0)	0 (0.0)	0 (0.0)	42 (100.0)
<b>총계</b>	<b>100</b>	<b>7</b>	<b>107</b>	<b>1 (0.5)</b>	<b>46 (22.7)</b>	<b>34 (16.7)</b>	<b>94 (46.3)</b>	<b>5 (2.5)</b>	<b>7 (3.4)</b>	<b>12 (5.9)</b>	<b>1 (0.5)</b>	<b>3 (1.5)</b>	<b>203 (100.0)</b>

- 1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4호: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5호: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6호: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7호: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8호: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9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4)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조치 현황

##### 가. 피해아동 분리보호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9,833건 중에서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초기 분리보호건수는 2,912건으로

전체 사례의 30%의 아동이 분리보호 되고 있다. 분리보호 되지 않은 70%의 아동들은 대부분 원가정에서 보호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학대 및 후유증 감소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는 피해아동의 원가정 기능 회복을 위한 가족기능강화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분리보호된 아동은 전체 분리보호수 2,912건 중 2,046건으로 7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시설보호가 1,144건(56.0%)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친인척 보호 706건(34.5%), 연고자 보호 11건(5.6%), 의료기관 인도 67건(3.3%), 가정위탁 15건(0.7%)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처벌법 응급조치로 분리보호된 아동은 전체 2,912건 중 866건으로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응급조치 3호(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조치는 768건(88.7%), 4호(피해아동 의료기관 인도) 조치는 98건(11.3%)이었다.

〈표 2-12〉 피해아동 분리보호 근거

(단위: 건, %)

피해아동 분리보호 근거	건수
아동복지법 제15조 보호조치 중 분리보호	2,046(70.0)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응급조치 중 분리보호	866(30.0)
계	2,912(100.0)

〈표 2-13〉 피해아동 분리보호 현황

(단위: 건, %)

구분		아동복지법 제15조 보호조치 중 분리보호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응급조치 중 분리보호
보호시설 인도·보호	일시보호	1,144(56.0)	945(46.2)	768(88.7)
	장기보호		199(9.8)	
친인척 보호		706(34.5)		-
연고자 보호		114(5.6)		-
의료기관 인도·입원		67(3.3)		98(11.3)
가정위탁		15(0.7)		-
계		2,046(100.0)		866(100.0)

#### 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속관찰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에는 총 6,435건(75.8%)이었으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에는 6,305건(64.2%)으로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고소·고발·사건처리는 고소 및 고발과 수사의뢰,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 사법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조치로 1,045건(12.3%)에서 2,63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체 사례에 대비 1/4를 초과한 26.8%를 차지했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으로 지속관찰의 조치는 감소하고, 고소·고발·사건처리의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학대를 개인의 가족사로 보는 것이 아닌 범죄로 받아들이는 인식변화의 모습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가족기능강화를 위하여 학대행위자의 처벌보다는 학대행위자의 교육 및 상담의 임시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표 2-14〉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현황

(단위 : 건, %)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계
아동학대처벌법시행이전 (2013.09.29.~2014.08.31.)	6,435(75.8)	537(6.3)	1,045(12.3)	476(5.6)	8,493(100.0)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2014.09.29.~2015.08.31.)	6,305(64.2)	504(5.1)	2,638(26.8)	379(3.9)	9,826(100.0)

#### 다. 서비스 제공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극복하고 학대행위자의 재학대를 방지하며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개별상담·집단상담·기관상담을 포함하는 상담서비스, 검진 및 검사·입원치료·통원치료를 포함하는 의료서비스, 심리검사·미술치료·놀이치료 등

을 포함하는 심리치료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기관 연결·공적 지원 연결을 포함하는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 등을 통한 일시보호서비스,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진행과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에 대한 서비스가 포함된다.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한 전체 서비스를 비교해보면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에 214,773건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319,290건을 제공해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약 48.7%가 증가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사례 한 건 당 평균 서비스 제공 횟수가 23.5건이었던 것에 비해 시행 이후에는 32.5건으로 무려 38.3%가 증가한 수치이다.

#### ① 피해아동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건수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 148,934건에서 시행 이후 206,806건으로 약 38.9%가 증가하였다. 피해아동에게는 주로 상담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리치료 서비스는 피해아동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심리검사와 약 12~30회기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학대피해의 후유증을 감소하고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② 학대행위자

가장 주목해야 하는 변화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건수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에 31,472건을 제공하였으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54,460건을 제공하여 약 73.0%가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큰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학대행위자 개입이 용이해지고 활발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 학대행위자 개입과 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③ 부모 또는 가족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건수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34,367건이었으나 시행 이후 58,024건으로 약 68.8%가 증가하였다. 이는 학대행위자 개입 서비스가 늘어난 것처럼 피해아동의 가족기능강화를 위하여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개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서비스 내용 중 가장 큰 변화는 사건처리지원서비스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에는 598건에 불과하였는데,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8,428건으로 약 1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진행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고소·고발 및 보호처분 등에 대한 서비스가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조사와 사례관리팀으로 분리되어서 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기에 조례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충원되면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2-15〉 사례 1건당 평균 서비스제공 건수

(단위: 건)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 (2013.09.29.~2014.08.31.)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2014.09.29.~2015.08.31.)
총 서비스 횟수	214,773	319,290
사례 1건당 평균 서비스제공 횟수	25.2	32.5

〈표 2-16〉 서비스 제공 현황

(단위: 회, %)

신고시점 서비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 (2013.09.29.~2014.08.31.)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2014.09.29.~2015.08.31.)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또는가족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또는가족
상담 서비스	개별상담	25,726(17.3)	22,103(70.2)	23,707(69.0)	37,455(18.1)	35,003(64.3)	43,080(74.2)
	집단상담	1,183(0.8)	212(0.7)	273(0.8)	951(0.5)	261(0.5)	454(0.8)
	기관상담	44,452(29.8)	4,145(13.2)	3,865(11.2)	67,869(32.8)	8,678(15.9)	8,608(14.8)
	주변인상담	2,766(1.9)	519(1.6)	2,131(6.2)	2,157(1.0)	450(0.8)	659(1.1)
	소계	74,127(49.8)	26,979(85.7)	29,976(87.2)	108,432(52.4)	44,392(81.5)	52,801(91.0)
의료 서비스	검진 및 검사	487(0.3)	35(0.1)	87(0.3)	623(0.3)	61(0.1)	86(0.1)
	입원치료	1,537(1.0)	1,008(3.2)	245(0.7)	2,872(1.4)	2,650(4.9)	590(1.0)
	통원치료	422(0.3)	63(0.2)	52(0.2)	425(0.2)	64(0.1)	99(0.2)
	소계	2,446(1.6)	1,106(3.5)	384(1.1)	3,920(1.9)	2,775(5.1)	775(1.3)
심리 치료 서비스	심리검사	1,613(1.1)	302(1.0)	404(1.2)	2,195(1.1)	507(0.9)	453(0.8)
	심리치료	10,084(6.8)	2,188(7.0)	2,042(5.9)	14,025(6.8)	2,553(4.7)	2,081(3.6)
	소계	11,697(7.9)	2,490(7.9)	2,446(7.1)	16,220(7.8)	3,060(5.6)	2,534(4.4)
가족 기능 강화 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6,832(4.6)	363(1.2)	485(1.4)	3,306(1.6)	329(0.6)	577(1.0)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연결	271(0.2)	66(0.2)	61(0.2)	515(0.2)	108(0.2)	89(0.2)
	공적지원연결	78(0.1)	23(0.1)	28(0.1)	158(0.1)	15(0.0)	10(0.0)
	소계	7,181(4.8)	452(1.4)	574(1.7)	3,979(1.9)	452(0.8)	676(1.2)
일시보호서비스		47,356(31.8)	-	-	63,358(30.6)	-	-
사건처리지원서비스		598(0.4)	-	-	5,257(2.5)	3,016(5.5)	155(0.3)
기타		5,529(3.7)	445(1.4)	987(2.9)	5,639(2.7)	765(1.4)	1,083(1.9)
계		148,934(100.0)	31,472(100.0)	34,367(100.0)	206,806(100.0)	54,460(100.0)	58,024(100.0)

### 3.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아동복지법 시행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변화지표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이후 현장의 변화 등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경찰과 상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상담원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22일~9월 30일까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조치 및 제도, 긍정적인 변화 및 개선방안, 유관기관 협력 등에 대해 질문하였고, 경찰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1일~2015년 10월 5일까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조치 및 제도 활용, 개선 방안, 유관기관 협력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상담원은 131건, 경찰은 207건의 설문이 취합되었고, 이중 결측치를 제외하고 상담원 131건, 경찰 202건을 최종 분석하였다.

#### 1) 법 시행 이후 현장의 변화에 대한 의견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긍정적으로 변화된 점, 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게 하여 가중치를 설정한 다음 본래의 건수로 환산하여 응답률이 높은 항목을 측정하였다. 상담원을 대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된 점과 개선해야할 방안 모두 조사하였고, 경찰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에 대하여만 조사하였다.

##### 가. 법 시행 이후 상담원이 바라본 긍정적 변화

먼저 법 시행 이후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한 내용을 상담원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피해아동 보호체계가 강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담원들이 강화된 법적절차 및 공적인 유관기관의 아동학대 업무개입을 통하여 피해아동보호체계가 확립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

화로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아동학대 조사체계의 강화 21.4%, 현장조사 시 경찰동행으로 상담원의 신변안전 확보 17.6%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조사 영역에서의 업무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상담원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법 시행 이후 상담원이 바라본 긍정적 변화

(단위: 명, %)

구분		긍정적 변화
상담원	아동학대사건 조사체계 강화	28(21.4)
	아동학대 신고체계 강화	16(12.2)
	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	32(24.4)
	현장조사시 경찰동행으로 상담원의 신변안전 확보	23(17.6)
	학대행위자 조치 강화	16(12.2)
	학대행위자 개입에 대한 거부감 해소 (상담수강명령 등)	11(8.4)
	서비스 및 사후관리 제공량 증가	1(0.8)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캠페인 수요 증가	-
	잘 모르겠다	2(1.5)
	응답없음	2(1.5)
총계		131(100.0)

#### 나. 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상담원을 대상으로 질문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증가와 상담원 수 증가가 각각 23.7%, 20.6%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확보가 16%로 나타났는데, 응급조치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으로 아동을 분리보호 하고자 하지만 피해아동을 보호할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답변들이



많았고, 특히 영아 또는 장애아동 등을 대상으로 입소 가능한 시설이 많지 않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권한 강화 15.3%, 상담원 전문성 향상 6.9%, 유관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예방교육 강화 6.1%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상담원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의견

		(단위: 명, %)
구분		상담원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 의견
상담원	상담원 수 증가	27(20.6)
	아동보호전문기관 증가	31(23.7)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권한 강화	20(15.3)
	사업 예산 확대	5(3.8)
	상담원 전문성 향상	9(6.9)
	<b>지역 내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확보</b>	<b>21(16.0)</b>
	유관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예방교육 강화	8(6.1)
	지역사회 내 서비스 체계 확대	5(3.8)
	기타	2(1.5)
	응답 없음	3(2.3)
<b>총계</b>		<b>131(100.0)</b>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을 경찰을 대상으로 질문하여 분석한 결과, 상담원 및 기관수 확대 등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충이 30.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이는 상담원을 대상으로 질문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두 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의 확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국민 인식 전환 및 훈육 문화 변화가 20.5%, 지역사회 내 학대아동서비스체계 통합 및 확대 18.7%, 아동학대 전담수사팀 마련 등 경찰의 인력 확충은 16.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 경찰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의견

(단위: 명, %)

구분		경찰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 의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충 (상담원 수, 기관수 등)	61(30.1)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6(3.0)
	아동학대 전담수사팀 마련 등 인력확충	34(16.8)
	담당 검사 인력 및 기능 보강	1(0.6)
	유관기관 관련 협력 간담회·교육 증가	6(2.8)
	지방법원 내 아동보호사건 인식 증대	9(4.5)
	지역사회 내 학대아동서비스체계 통합 및 확대	38(18.7)
	대국민 인식 전환 및 훈육문화 변화	41(20.5)
	기타	1(0.5)
	응답 없음	5(2.5)
총계		202(100.0)

## 2)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개입절차의 유용성

### 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및 제도의 업무활용 정도

상담원과 경찰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및 제도의 업무활용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상담원은 응급조치(필요적 임시조치)가 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찰은 신뢰관계인 동석이 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업무활용정도가 가장 낮은 조치 및 제도는 상담원은 친권 상실의 청구가 2.0점으로 가장 낮았고, 경찰은 피해아동보호명령과 국선보조인선정이 각각 2.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① 응급조치

응급조치는 상담원과 경찰 모두 아동 분리보호의 법적 타당성이 마련되었고, 학대 현장에서 신속하게 아동의 안전을 보호 및 학대행위자 행위 제지를 할 수 있다 점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상담원의 경우 응급조치가 가장 유용하면서도 현장에서 상담원과 경찰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조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답변들도 있었고, 경찰의 경우 응급조치 2·3·4호는 필요적 임시조치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사건으로 처리하기에 증거 또는 정확이 부족한 경우 형사사건 진행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 ② 피해아동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판사의 판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아동 보호와 학대행위자 제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조치라고 답하였으며, 방임 사례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 높은 분포율을 보였다. 그러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청구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결정되기까지 시간 소요가 많이 되어 활용이 어렵다는 답변들도 있었다.

### ③ 신뢰관계인 동석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의 경우 경찰은 아동 진술 확보 시 가장 유용하였으며, 가장 현실적인 제도라고 답하였다.

### ④ 친권상실청구

친권상실청구 조치의 경우 활용 정도가 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친권상실청구의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례가 많지 않아 활용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의 친권상실청구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친권상실청구가 필요한 사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치해야 할 것이다.

〈표 3-4〉 상담원과 경찰의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및 제도의 업무활용 정도

(단위: 점)

구분	업무활용정도	
	상담원 (N=113)	경찰 (N=202)
응급조치(필요적 임시조치)	3.7	3.4
긴급임시조치	2.7	2.9
임의적 임시조치	2.9	3.2
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3.2	2.8
행위자 보호처분	3.1	2.9
국선보조인 선정	2.6	2.8
피해자 국선변호사	3.1	3.0
진술조력인	2.7	3.1
신뢰관계인 동석	3.6	3.6
친권상실의 청구	2.0	-

나. 개정 아동복지법 조치 및 제도의 업무활용 정도

개정 아동복지법 조치 및 제도의 업무활용 정도를 분석한 결과,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의 아동학대 통보가 49.0%로 활용 정도가 가장 높은 조치라고 답변하였고, 아동학대행위자 상담·교육 권고가 25.0%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활용 정도가 낮은 조치로는 아동학대행위자 상담·교육 권고가 30.3%, 주소지 이전 및 전학 지원 18.2%, 피해아동 응급조치 거부금지가 16.7%로 높게 나타났다.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의 아동학대 통보는 신고 단계에서부터 경찰과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장조사 시 많은 도움이 되는데, 특히 경찰이 우선 출동한 사례 또는 경찰과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학대행위자의 거부감이 줄어들어 조사에 있어서 보다 수월해졌다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 상담·교육 권고의 경우에는 거부적인 학대행위자에게 법적 조항에 따라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이 아니라 권고하는 수준이라 참여율이 낮아 효과성은 미비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는 아동복지법에도 아동학대행위자 상담·교육을 권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강제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프로그램 제공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주소지 이전 및 전학지원 조치는 행정기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전입전출시 친권자의 동의와 서명을 요청하는 등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는 교육부와 소통하고 협의하여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표 3-5〉 상담원의 개정 아동복지법 조치 및 제도의 업무활용 정도

(단위: 점)

구분	업무활용정도	활용 정도 낮은 조치	
	(N=96)	(N=66)	
상담원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의 아동학대 통보	47(49.0)	9(13.6)
	피해아동 응급조치 거부금지	14(14.6)	11(16.7)
	주소지 이전 및 전학 (지역 내 취학) 지원	2(2.1)	12(18.2)
	아동학대행위자 상담·교육 권고	24(25.0)	20(30.3)
	피해아동 및 가족지원 (필요서비스 제공)	8(8.3)	5(7.6)
	재학대 확인 및 사후관리	1(1.0)	9(13.6)

#### 다. 상담원의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의 어려운 점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상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관기관의 이해가 부족하거나(43.6%), 경미한 사례에 대해 적용이 어렵다고(37.2%)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유관기관의 적극성이 부

족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유관기관 간 학대에 대한 견해를 좁히고, 상호의 업무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6〉 상담원의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의 어려운 점

(단위: 명, %)

구분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의 어려운점 N=78 (중복응답)
상담원	유관기관의 이해부족	34(43.6)
	협력기관부족	1(1.3)
	관련 법률 상 상담원 권한 미비	7(9.0)
	상담원 적극성 부족	1(1.3)
	복잡한 행정절차	5(6.4)
	경미한 사례에 대한 적용 한계	29(37.2)
	기타	1(1.3)

### 3) 다양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 ① 유관기관 간 효과적인 업무협력에 대한 상담원의 인식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관할 지역 내에서 유관기관 간의 협업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경찰이 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타 사회복지 관련 유관기관 3.4점, 법원 3.1점, 검찰 및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각각 2.9점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업무 협력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유관기관을 질문한 결과, 경찰이 6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앞으로 보다 긴밀한 필요한 유관기관을 질문한 결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신고접수 단계부터 현장조사 그리고 피해아동 또는 학대행위자 조치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가장 긴밀하

게 협력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업무협력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유관기관으로는 타 사회복지관련 유관기관이 15.3%의 분포를 보였고, 앞으로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유관기관으로 검찰과 법원이 각각 13.7%를 차지하였다.

〈표 3-7〉 유관기관 간 효과적인 업무 협력에 대한 상담원의 인식

구분		유관기관 간 효과적인 업무협력 인식 정도 (단위: 점)	업무협력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유관기관 (단위: 명, %)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유관기관 (단위: 명, %)
상담원	경찰	3.7	91(69.5)	68(51.9)
	검찰	2.9	0(0.0)	18(13.7)
	법원	3.1	2(1.5)	18(13.7)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2.9	9(6.9)	6(4.6)
	타 사회복지관련 유관기관	3.4	20(15.3)	10(7.6)
	무응답	-	9(6.9)	11(8.4)
총합		-	131(100.0)	131(100.0)

## ② 유관기관 간 효과적인 업무협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관할 지역 내에서 유관기관 간의 협업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5점 척도로 경찰에게 질문을 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2점으로 가장 높았고, 검찰이 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업무 협력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유관기관을 질문한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9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앞으로 보다 긴밀한 필요한 유관기관을 질문한 결과 마찬가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찰은 타 사회복지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28.2%가 답변하였다.

이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사태의 신고접수단계부터 현

장조사에 이르기까지 초기에 피해아동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상호 업무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찰 응답자 중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조 상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주기적인 통합사례회의 및 간담회를 통하여 피해아동 보호명령 결정, 사후관리 정보 등 자료 공유에 원활한 협조에 대한 답변이 많았으며, 상호간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경찰은 학대행위자 중심 형사처벌 중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 및 심리, 학대행위자 교육 등의 서비스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부족 및 기관 부족을 호소하였고, 경찰 내부 여성청소년수사팀 내부에 아동학대전문수사관을 임명하여 이에 대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표 3-8〉 유관기관 간 효과적인 업무 협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

구분		유관기관 간 효과적 업무협력 인식 정도 (단위: 점)	업무협력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유관기관 (단위: 명, %)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유관기관 (단위: 명, %)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4.2	186(92.1)	110(54.5)
	검찰	2.7	1(0.4)	-
	법원	2.8	-	19(9.4)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3.0	-	10(5.0)
	타 사회복지관련 유관기관	3.4	10(5.0)	57(28.2)
	무응답	-	5(2.5)	6(3.0)
총합		-	202(100.0)	202(100.0)

#### 4. 제언 및 개선 과제



## 1) 유관기관 간 상호업무 이해 및 아동학대 민감성 증진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상호간의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인식수준이 유사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협업하여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 현장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유관기관 간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공동업무수행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신체적 손상이 있는 신체학대의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반면, 정서학대나 방임 사례의 경우는 소극적으로 개입되거나 신체적 손상이 없는 경우 가정 내 훈육으로 인한 체벌로 인식하는 등이 종종 있다. 또한 경찰·검찰·법원은 인사이동이 잦기 때문에 인사이동 때 마다 아동학대 관련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및 아동학대교육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하며, 관할 지역 내에서 주기적인 워크숍, 간담회, 사례회의 등을 개최하여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사례를 논의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상호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워크숍 및 간담회, 사례회의 등을 정례화 하는 내용을 내년 개정할 공동업무수행지침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2)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마련

아동학대범죄 사건 진행에 대한 경찰·검찰·법원과의 긴밀한 협조 시 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원활한 정보 공유와 소통은 필수적이다. 현재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매월 원활한 아동학대예방사업 업무를 위해 유관부처 회의를 진행 등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보 공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및 개인정보보호 법 등 정보관리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에 대한 유관기관 간 정보제공 내용을 명시하여 학대행위자의 사건 진행과정 및 조치 결과,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결정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3) 아동학대 관련 인프라 확충

아동학대처벌법과 개정 아동복지법이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 수의 증원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으로 인하여 신고율 증가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현장조사, 그리고 피해아동 후유증 감소 및 학대행위자 변화를 위한 사례관리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에 대한 인력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총 503명이고, 전국 아동인구수로 나누어보면 상담원 1인당 약 18,000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으나 미국 텍사스 주와 같은 경우 상담원 1인당 아동 약 1,449명<sup>8)</sup>을 담당하고 있다. 1차적으로 신고접수건수 및 관할지역 면적 등으로 자료를 분석 한 뒤 이에 맞는 인력 증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동인구 10만 명 당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100개소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관할 지역 내 이동 거리, 신고건수, 아동 인구수 등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가 개소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분리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총 37개소이며, 이에 따른 연간 보호가능한 아동

---

8) 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DFSP 2011 Data Book」, 2011.

수를 추정하면 1,036명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로 판단되어 분리보호된 아동은 2,912명으로 분리보호된 아동 중 약 36%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여 추가 개소를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아동, 영아 등 특성을 가진 피해아동을 위한 시설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장애아동 피해아동쉼터, 영아 전용 피해아동쉼터 등도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전담경찰과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전담 경찰 배치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사건 특성 상 신속한 출동 및 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결정 시, 조치 방향 결정을 위한 사례 회의 등 경찰과 상담원이 충분히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아동학대 업무가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 **4) 아동복지법 내 학대행위자 상담·교육의 강제성 필요**

개정 아동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해당 법 조항은 권고 일 뿐 실제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을 통하여 상담·교육 조치를 받게 되면 강제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지만, 권고 사항에서는 소극적이거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조치되는 사례가 전체 사례의 12%이고, 이 외의 사례는 아동복지법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에 대한 강제성이 부과될 수 있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5년 8월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여야 한다.’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발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올해는 아동학대처벌법과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된지 1년 밖에 되지 않

은 시점이라 법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한 시기이다. 아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유관기관 간 견해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아동학대 관련 인프라도 부족한 현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초기 세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유관기관 업무 역할 정립 등과 같이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포럼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조속히 수정할 수 있는 추후 과정이 필요해보이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업이 기대된다.

##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14).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관계부처 합동(2014). 아동학대 관련 법령집.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아동학대 참고자료집 내부자료.

장화정(2015) 아동보호서비스 개입 과정의 변화. 2015 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아동학대와 훈육의 갈등, 그 기준을 현장에서 찾다」 자료집.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상담원 및 경찰의 법 시행 이후 현장의 변화 설문지 및 설문결과 내부자료.

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2011). 「DFSP 2011 Data Book」.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www.koreal391.org](http://www.koreal391.org))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 참고 1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현황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00개소 설치 시 시도별 소요 추계(2015.9.30현재)

연번	시도명	아동수(명)	면적(km <sup>2</sup> )	의심사례 신고수(건)	현재개소수(개)	증설소요(개)	100개 설치시(최종)
							개소수
합계		9,099,339	100,285	15,656	56	44	100
1	서울	1,543,394	605	1,892	8	7	15
2	부산	535,667	770	627	3	2	5
3	대구	443,500	884	530	3	1	4
4	인천	529,323	1,048	679	3	2	5
5	광주	309,801	501	313	1	2	3
6	대전	300,466	539	368	1	2	3
7	울산	227,998	1,061	507	1	1	2
8	세종	25,874	465	29	0	1	1
9	경기	2,417,889	10,173	4,104	11	13	24
10	강원	261,354	16,826	762	4	2	6
11	충북	286,069	7,407	672	3	1	4
12	충남	379,957	8,214	850	3	2	5
13	전북	331,121	8,067	1,158	3	1	4
14	전남	316,793	12,309	923	3	3	6
15	경북	442,631	19,029	1,006	4	1	5
16	경남	624,681	10,538	852	3	3	6
17	제주	122,821	1,849	384	2	0	2

## 참고 2

## 상담원 인건비 산출 내역(안)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산출내역>

15명×39,515천원=592,725천원 (2015년도 사회복지관 인건비 기준 준용)

- 기본급 : 27,214천원×15인=371,520천원
  - 관장(14호봉) 3,571천원×12월×1인=42,852천원
  - 팀장(과장 8호봉) 2,428천원×12월×2인=58,272천원(1인 29,136천원)
  - 선임상담원(선임 5호봉) 1,998천원×12월×4인=95,904천원(1인 23,976천원)
  - 상담원(2호봉) 1,690천원×12월×5인=101,400천원(1인 20,280천원)
  -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과장 6호봉) 2,224천원×12월×2인=53,376천원(1인 26,688천원)
  - 사무원(4급 2호봉) 1,643천원×12월×1인=19,716천원
- 명절수당(월기본급×60%×2회) : 371,520천원÷12월×60%×2회=37,152천원
- 특수근무수당(가정방문 등에 따른 위험수당) 200천원×12월×14인(사무원 제외)=33,600천원
- 가족수당(배우자+부양2) 80천원×12월×8인=7,680천원
- 시간외근무수당(관장 제외, 14인 보수월액(기본급+명절수당) 평균 2,152천원) 2,152천원×(1/209×1.5)×20시간×14인×12월=51,895천원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기본급및모든수당 총액의 1/12, 15인) 501,847천원÷12월=42,821천원
- 사회보험부담금(기본급및모든수당 총액의 사용자부담율, 15인) 501,847천원×11.877%(사용자부담율)=59,604천원
- 계수조정 : △ 11,547천원(=592,725천원-604,272천원)



## 사례발표

---

유관기관협력을 통한  
피해아동보호 및 가족기능회복사례





# 토 론

---

##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방안

1. 한명애 관장(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2. 이용욱 경정(경찰청 여성청소년과)
3. 안성희 검사(서울지방검찰청 여성아동조사부)
4. 여현주 판사(서울가정법원)
5. 강동욱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력체계 강화 방안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한 명 애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1주년 성과 및 개선과제에 대한 장화정 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본 법을 기반으로 1년간 일해 온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으로서 주제문에 다루어진 성과와 구체적인 제언 및 개선과제에 공감합니다. 본 토론에서는 주제문 속 개선과제의 연장선상에서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실행을 위한 업무협조

□ 아동학대 신고현장에 동행출동하여 경찰의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극개입,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신속상담 및 보호에 대한 이상적인 처리가 아직은 원활하지 않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속 사례관리의 필요성과 행위자의 협조 가능성, 경찰은 처벌 필요성으로 판단하다보니 서로 다른 개입결정이 나기도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 보는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 제 17조를 포함하므로 경찰의 입장에서 본 학대가 정서학대, 방임으로 경미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학대행위자의 변화가 기대되지 않는다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적극 처리하여 학대행위자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 될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장 기대한 것 중 하나는 학대행위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을 강제하여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는데 있었다. 법에서도 학대행위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은 임시조치,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조항 3군데서 언급되고 있어 그 중요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에서 고소·고발·사건처리 2,638건 중 임시조치 5호(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의 상담 및 교육 위탁)는 299건에 불과하여 행위자의 인식개선 보다는 처벌에 우선 법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9)</sup> 피해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의 근원적인 변화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위탁 처분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보면 5.1%만이 피해아동과 분리조치가 되고 있다.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에서 70%가 원가정내에서 보호되고 있어 아동학대 신고 이후에도 대부분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함께 지내고 있다. 이 경우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검찰, 법원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각 개인의 아동학대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역할을 한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가해 및 피해 개인과 가족 구성원의 기능회복, 안전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하므로 각 단계별 처리 정보를 알고 사례개입 하여야 한다. 학대행위자의 사건번호, 법원의 심판결과,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이행사항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2. 법 실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응급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에 의해 피해아동의 보호시설로의 인도가 이루어져 학대행위자의 거부로 인한 보호불가 문제는 1차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면적당 수용인원 제한 조치로 인하여 정원이 축소되어 정작 제도가 있어도 아동을 입소시킬 시설이 부족하다. 유엔아동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인해 대규모 시설 추가 설치

9) 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결정 통계가 없어서 임시조치 통계로만 미루어본 한계가 있다.

가 어렵다면 가정위탁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제발표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을 언급하였으나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쉼터의 확충은 인건비의 충분한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학대피해로 인한 다양한 심리정서적 후유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현재는 아동양육시설보다도 낮은 단가의 인건비 지급으로 인력확보가 매우 어렵다.

□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은 업무량의 증가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업무량 증가에 따라 2014년 364명이었던 상담원이 2015년 503명으로 38.0%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의심신고도 16.0% 증가하여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와 사후관리 이외에도 아동학대처벌법 처리절차 업무까지 더하면 상담원들 업무량 증가로 매우 고된 현실이다.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상반기 업무분석을 보면 1인당 주평균 68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13회의 야간 현장출동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상담원 연속 근무율은 10개월로 업무전문성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늘어난 신고수와 업무량에 대비하여 인력충원이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신고가 많은 지역에 대한 차등 인력지원도 필요하다.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현재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는 만큼 시간일 갈수록 임시조치, 보호처분을 통한 상담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의뢰가 늘어나고 있다. 통상 임시조치의 경우 2개월, 보호처분의 경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주 1회씩 실시했을 때 임시조치의 경우 1인당 최소 8회 40만원, 보호처분의 경우 1인당 최소 24회 120만원의 상담비가 발생한다.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16명의 학대행위자의 상담 예산이 10월에 종료된다. 학대행위자의 충분한 상담치료를 위한 국고 사업비 확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보건복지부 2016년 예산이 확정되어 증액이 어렵다면 법원의 예산지급도 고려해야 한다.

### 3. 법 개정 및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 실행근거 강화

□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2014, 관계부처합동)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출동과 응급조치, 아동학대처벌법절차(임의적 임시조치 신청요청,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등) 외에도 피해아동 및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대행위자가 사후관리를 거부 할 시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개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15년 8월 이명수 의원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조속히 법안이 심의의결되기를 기대한다.

□ 마지막으로 임시조치로 생계를 책임지는 학대행위자가 퇴거 또는 접근금지 될 시 원가정에 남은 피해아동과 가족들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경제적 서비스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 심각한 아동학대로 학대행위자가 퇴거 조치되더라도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시조치 기간 중에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피해아동의 비학대 보호자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고용노동부의 취업패키지 연계 등 경제적 지원과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를 명문화하여 학대행위자의 조기 복귀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경찰 단계에서의 협력체계 강화 방안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정 이 용 옥

## 1. 들어가며

’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법’)은 심각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보호조치를 통해 피해아동을 두텁게 보호함은 물론 학대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형사처벌, 아동보호사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원가정 보호와 함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아동보호체계의 신기원으로 평가된다.

아동학대 처벌법의 가장 큰 변화는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일 것이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12조<sup>10)</sup>는 응급조치를 규정하면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아동학대 처벌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아동학대 처벌법의 요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sup>11)</sup>에 따른 경찰의 직무 중 제일 첫째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인 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공공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전통적인 경찰의 역할과 다르지 않다. 다만,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인 능력이 미약한 사회적 약자로 일반 성인과 달리 보다 두텁고 특별한 안전장치(‘아동학대 처벌법’)가 마련되어야 하며 안전장치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국가와 민간기관은 관련 취지를

---

10) 아동학대 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충분히 공감하고 협력해야 비로서 피해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서는, 경찰의 아동학대 사건처리 단계에 따른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 노력과 유관기관과의 협업 실태를 살펴보고 협업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II. 아동학대 사건처리 단계별 피해아동 보호방안<sup>12)</sup> 및 협업 강화방안

### 1. 신고접수와 동행출동 단계

#### 가. 피해아동 안전확보

작년 9.29일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1577-1391 등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인지도가 높은 112로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경찰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후 11개월간(' 14.9.29 ~ 15.8.31) 총 7,616건으로 시행 이전 11개월(' 13.9.29 ~ 14.8.31)의 2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고 전체 아동학대 신고의 44%를 담당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신고로부터 시작된다. 신고가 없으면 국가의 개입도 피해아동 보호도 없다. 따라서 최초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이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응대하느냐 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음은 경찰의 ‘아동학대 유형별 대응 매뉴얼’ 중 신고전화 접수요령을 기술한 부분이다.

---

12) 아동학대 사건처리 단계별 피해아동 보호방안은 경찰이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을 대비하여 마련한 ‘아동학대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 신고전화 접수요령 >

㉔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인(긴급상황 여부 파악)

- 신고자 신분을 파악(피해아동과의 관계, 신고의무자 여부, 기타)하고 아동의 안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우선

**아동의 안전확보**

- ▶ 외부로 피신이 가능한 경우, 이웃집이나 인근 가게로 피신 유도
- ▶ 학대의심자가 현장 이탈시, 출입문을 시정 후 통화하도록 유도
- ▶ 피해아동의 부상정도가 심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119 또는 병원 응급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피해아동 구호
- ▶ 피해아동의 안전이 확인되면 현장 증거 보존을 위한 주의 당부
  - ※ 청소하지 말 것, 씻거나 샤워하거나 환복하지 말 것, 발생장소에 애완견 등이 다닐 수 없게 할 것, 외부인 왕래 금지 등 당부

- 긴급상황 판단시, 3자통화(공청) 및 필요시 위치확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치 확인 후 先 출동
- 모든 아동학대 신고 사건은 현장확인 하도록 “Code 2”이상 지정하고 응급 아동학대신고는 “Code 1”으로 지정

㉕ 아동본인의 신고

- 아동의 신고는 모두 장난이나 오인신고일 것이라는 선입견 배제
- 아동에게는 ‘한 번에 한 가지’ 질문을 원칙으로 하고 경찰출동을 위한 필수 내용만 간단히 질문
  - ※ 여러 질문을 하면, 익숙하고 간단한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경향이 있음
- 아동 눈높이에 맞는 자연스러운 표현 및 용어를 사용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얘기하도록 유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은 신고접수 단계부터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를 제1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접수 이후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사실과 관련 내용을 우선으로 즉시 통보하여 현장 동행출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반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로 동행 출동을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 나. 협업 강화방안

첫째, 아동학대 처벌법 제11조<sup>13)</sup>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호 동행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현실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문제로 경찰로 접수된 신고 중 아동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는 응급 아동학대신고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동행을 요청하고 있다.

결국, 전체 아동학대 신고의 44%를 접수하는 경찰은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후 11개월간 접수된 15,329건의 사례 중 4,162건을 경찰 단독으로 출동하였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전문성과 국가 공권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아동학대 처벌법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일 것이다.

인력과 조직 보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할 명예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시·군·구별로 선발하거나 지역사회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하여 경찰과 동행 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만하다.

둘째, 112는 국민들의 인식 속에 범죄신고 전화라는 인식이 강하다. 물론 다양한 홍보와 교육으로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고 올해 초 충격적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국민의 아동학대 민감성이 증진되었지만, 선뜻 112로 바로 신고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도 현실이다.

1577-1391이 112로 통합된 현재에는 국민들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상

---

13) 아동학대 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답을 받기 위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락처를 검색하거나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해야 한다. 심지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거나 129를 모르는 국민은 상담전화를 확인하는 것조차 번거로운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전환 홍보와 교육을 진행할 때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 번호에 대한 홍보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맞춤형 홍보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현장조사 단계

### 가. 피해아동 안전확보

경찰은 현장조사 단계에서도 피해아동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다.

#### < 현장출입 요령 >

##### ㉠ 내부에 인기척이 있으나 출입 및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 아동학대가 진행 중이거나 직후라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출입 및 조사권」을 고지 후 즉시 유형력을 행사하여 가택 진입
- 경찰관에게 「현장출입 및 조사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피해아동의 안전확인**을 위해 신고된 장소의 내부 확인이 필요함을 설명
- 피해아동 또는 학대의심자가 설득에도 불구하고 출입 및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방직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시정장치 해정 후 진입

※ 피해아동이 신고를 철회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아동의 안전 및 피해상태 확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지만 출입을 거부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경고와 불응시 강제진입을 규정하여 피해아동의 안전과 피해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찰이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축약형 위험도 평가척도’를 작성하여 세밀하게 현

장을 확인하도록 하고 ‘전화 코칭제’, ‘여성청소년 수사팀 현장출동 지원’으로 전문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처벌법 제12조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sup>14)</sup>하려고 할 때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학대의심자는 물론 피해아동도 보호자인 학대행위자와의 분리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아동의 안전과 법 조문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딜레마는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sup>15)</sup>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피해아동이 분리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응급조치 등 위반과 학대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응급조치 요령 >

②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보호시설 인도기준에 해당하면 직접 인근 아동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아동의 인수를 요청
  -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전담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계기관과 연락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에 인계 가능
- 아동이 격리조치를 거부시, 학대행위자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 명백한 가족·친척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상담사와 협력
- 보호시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등 다양한 보호시설의 정보를 안내
  - ※ 보호시설 인도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인 설득으로 피해아동의 마음을 돌리는 노력이 필요
- 현장에서 학대의심자가 응급조치 또는 긴급입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협하여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호시설로 인도

14) 아동학대 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전단생략--,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3.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15)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8.10 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이외에도,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분리조사를 통해 학대행위자의 영향력으로부터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나. 협업 강화방안

첫째, 학대와 훈육의 경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아동학대 현장에서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간의 이견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실 명확한 지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고 상당히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여 지지는 않는다. 학대의 개념은 국민의 법 감정과 시대상을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한다면 어찌면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기술로 비추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은 사법적 판단을 기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복지적 차원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려는 가치관의 차이도 학대를 판정하는데 이견을 가져오는 원인이다.

과거와 달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을 통한 기소와 법원 판례가 어느 정도 축적된 만큼 아동학대 유형별로 관련 판례집을 제작하여 사건처리 지침으로 삼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시대의 법 감정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현재 경찰(가정폭력 솔루션팀), 지자체(여성아동지역연대), 아동보호전문기관(사례판정위원회), 검찰(사건관리회의)은 기관별로 피해아동의 보

호와 지원, 그리고 학대판정이 필요한 사례를 선별하여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방안 또는 사법적 판단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①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 ②사법절차 지원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고 사건초기부터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는 다기관이 협력이 필요한 문제로 사건초기부터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앞으로의 복지적·사법적 지원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다기관 협력팀(Multidisciplinary Team)”을 구성하여 지역의 전문가(경찰, 검찰, 아동보호센터, 피해자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복지공무원, 의료인 등)가 피해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피해아동을 인터뷰하여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기관별 위원회의 장점을 살리고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사건 초기부터 피해아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다기관 협력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3. 수사 및 재학대 조기발견 단계

#### 가. 피해아동 안전 확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단계에서는 조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사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학대를 재차 경험하지 않도록 학대행위자와의 대면을 최소화하고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출장조사토록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 아동조사 요령 >

### ㉔ 조사 前 마음자세 및 태도

-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조사
- 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감안하여 조사과정에서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 조사시 주의사항

- ▶ 학대관련 반복 질문시 거짓진술을 할 수 있음에 유의
  - ※ 아동은 자신이 잘못해서 학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죄의식을 느끼거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경향이 강하여 허위진술을 할 수 있음에 유의
- ▶ 이웃·친척 등의 목격자 진술, 정신과·외과·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서(진술서) 의료기록 등을 적극 활용
- ▶ 아동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도한 경우 소견서 및 상담원 의견 청취
- ▶ 학대의심자와 피해아동간 대면 최소화
  - 출석일 또는 출석시간을 달리하는 등 피해아동과 학대자를 분리하여 조사
  - 대질조사시 학대자가 있는 곳에서 학대관련 질문을 하면 아동의 불안심리를 증폭시키고, 공포감을 재차 경험하게 할 우려가 높음에 유의
- ▶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출장 조사 등 적극 활용

아동학대 처벌법이 신뢰관계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를 차용한 것도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 나. 유관기관 협업 강화방안

아동학대 처벌법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임시조치 이외에도 피해 아동보호명령·보호처분·임시보호명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조치와 달리 법원이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경우 경찰로 통보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을 위반한 가정에서 재학대가 발생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경우, 피해아동이나 피해아동의 비학대행위자가 학대행위자의 법원결정 위반을 주장하여도, 경찰은 해당법원에 관련 결정사실과 결정문을 접수받아 확

인해야 한다. 물론 현장에서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응급조치와 긴급입시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재발이 우려되는 사안에서 법원결정 사항을 위반한 피의자(현행범 체포 가능)를 인신제재하지 못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원과 검찰이 재학대 행위자에 대해 신속하게 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원 결정사항을 관할 경찰서로 통보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III. 맺으며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안전’이다. 언제부터 인가 골든타임이 일상용어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안전의 기본은 예방이고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신고와 초동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난 ‘세월호 사건’이 말해주고 있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우리사회에서 아동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일응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고 법과 제도만으로는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의 협력이 스스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학대로 상처받은 한 아이를 보살피는 것은 어떠할까?

상처받은 아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검찰 단계에서의 협력체계 강화 방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조사부  
검사 안 성 희

2013년 울산과 칠곡에서 일어난 학대 피해아동 사망사건 등의 끔찍한 범죄를 겪어 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강화, 그 과정에서의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에 힘입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과 개정 아동복지법이 2014. 9. 29.자로 시행되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및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신설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가 마련되는 등 법률적으로 큰 변화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례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유관기관이 함께 그 성과를 돌아보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검사로서 이러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린다.

## 1. 형사사건의 진행 단계별 검찰의 개입

### 1) 초동수사 단계

-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
- 응급조치, 긴급입시조치

※ 초동수사 및 초기개입의 중요성 : 피해진술 확보, 증거능력 갖춘 진술 녹화, 보강증거 및 양형자료 수집, 피해회복 및 아동보호 계획

## 2) 검찰 송치 후 수사 단계

- 조사 과정 자체를 통한 선도 및 피해감정 회복
- 결정전 조사,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통한 정보수집 및 의견 취합
-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사건송치 ⇨ 가정유지, 개선가능성
- 기소 ⇨ 엄격한 증거판단, 엄벌 또는 격리의 필요성
-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지원

※ 사건 처리 방향 결정에 참고할 모든 정보취합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보호시설 관계자, 보호자(또는 가해자), 피해자국선변호사, 가정법원 판사 - 아동의 보호 상태, 가해자의 개선가능성, 검사 수사 내용 및 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진행 내용

## 3) 형사재판 단계

- 공소유지 및 증인지원
- 영상녹화물 증거제출

## 4) 친권상실 청구

## 2. 피해아동의 보호 대책 및 형사처벌의 관계

- 가해자 외에 다른 친권자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 가해자와의 가정을 유지하려는 피해아동의 의사 존중 여부
  - 피해아동을 위한 안전한 보호체계가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따른 선고형의 차이 가능성
- ⇨ 피해아동의 보호 상태에 대한 정보 공유 필요

## 3. 아동학대의 개념 정립 및 인식 전환 필요

-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의 측면에서 ‘아동학대’의 개념 정립 필요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방임 등
- 아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의 향상 필요
- 형사절차가 사회의 인식을 얼마나 선도해 갈 것인지

-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예) 징계·훈육과 아동학대, 허용되는 친근감의 표현 정도
- 아동학대 유발인자의 해소를 위한 사회 환경의 개선  
예) 산후우울증 예방 및 치료, 맞벌이 부부의 양육환경 지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보육·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부모의 인식 전환

#### 4. 마치면서

아동학대 사건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과 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가정의 유지나 보호절차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 처리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유관기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사건이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사실 발견 및 진술확보, 입증 및 공소유지가 어렵고, 아동을 위한 사건진행이 오히려 아동에게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줄 여지가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며 무엇이 진정 개별 아동 및 우리 사회 아동 일반을 위한 것인지 신중하고 종합적인 배려와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사건의 종결 이후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므로 유관기관의 협업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유관기관의 협력을 모색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피해자 보호와 함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발전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유발인자가 될 수 여지가 있는 사회적 요소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법원의 아동학대 예방정책 및 유관기관과 협조방안

서울가정법원  
판사 여 현 주

## 1. 법원의 아동학대 예방정책

가. 형사재판에서 양형기준의 강화

양형위원회는 2014. 3. 31. 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함(2014. 10. 1.부터 시행됨). 그에 의하면 일반적인 유기·학대로 인한 치상, 치사의 양형기준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아동학대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가중된 양형기준을 적용함.

### ○ 일반 유기·학대치사상죄의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학대치상 (7년 ↓)	2월 ~ 1년 6월	6월 ~ 2년	1년 ~ 3년
유기학대치사 (3년 ↑)	1년 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 ○ 아동학대처벌법위반죄의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학대중상해 (3년 ↑)	1년 6월 ~ 3년	2년 6월 ~ 5년	4년 ~ 7년
아동학대치사 (무기, 5년 ↑)	2년 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그 밖에도 성범죄 양형기준에 청소년에 대한 강간/유사강간은 일반강간 유형이 아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의 유형에 포섭하고, 청소년에 대한 범행을 가중요소로 규정하는 등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에도 양형판단의 중요 요소로 고려함.

나.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

- (1)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매뉴얼 등 업무자료 작성 및 교육
- (2)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임시조치를 당직업무포함
- (3) 위탁기관의 계속적 발굴 노력 및 유관기관 방문
- (4) 전담재판부와 전담조사관
- (5) 보호재판 담당 법관 연수 일정에 아동보호재판실무 연수 포함 등

## 2.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법원 사이의 업무 협조

가. 관할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제3호(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제5호(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이 관할이 규정되어 있음.

서울의 경우 아동보호사건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 모두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아동보호사건의 임시조치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이 아닌 서울 시내 각급 지방법원에서 관할하게 되므로 관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동부, 서울은평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3개 법원을 상대해야 함).

법원 명칭	관할구역	아동보호전문기관관할구역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구역임)	종로구	서울은평
	중구	서울특별시동부
	강남구	서울특별시/서울동남권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서울특별시동부
	광진구	서울특별시/서울동남권
	강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구	서울영등포
	구로구	
	금천구	서울강서
	강서구	
	양천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동부
	종량구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	
서울서부지방법원	강북구	서울성북
	은평구	서울은평
	서대문구	서울마포
	마포구	
	용산구	

(2) 특히 임시조치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위탁(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5호)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제8항), 법원의 관할이나 해당 사건의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여부에 따라 법원에 보낼 결과 보고서의 송부 장소가 변경되게 됨.

→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임시조치로 상담 및 교육위탁된 경우, 만일 결과보고서를 송부할 무렵 해당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면 되지만, 아직 송치되지 않았거나 또는 형사기소되었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송부해야 함.

#### 나. 다른 처분과의 병행, 변경 문제

##### (1) 처분의 병행 관련

법원에서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여러 처분(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제1항 각호)을 병과하고 있음.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특히 치료위탁(제7호)과 상담위탁(제8호) 사이에 처분집행의 선·후 문제에 대하여 질의가 오는 경우가 있음(예를 들어 아동학대행위자의 알코올중독 문제가 심각하여 먼저 알코올중독치료가 선행되어야 상담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현재 법원이 처분을 함에 있어 집행 순위를 지정하지는 않고 있고, 특별히 병과하는 처분의 집행 순위를 지정할 근거도 없음.

다만 집행의 과정에서 먼저 집행해야 하는 처분이 있고 이후에 다른 처분 내용을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는 집행기관의 자율적인 권한의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음.

→ 실제로 가정보호사건의 경우에도 상담위탁을 하는 경우 상담기관에서는 정규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해당 가정폭력행위자의 특성에 맞게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시간을 변형해서 집행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도 1년간 상담위탁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그 프로그램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진행 시간에 대하여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부와 협의를 진행해도 되고, 관행이 형성되었다면 자체적인 판단 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무방하며, 경우에 따라선 집행 후 추가 집행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 보호처분의 연장 신청(아동학대처벌법 제40조 제1항)을 고려할 볼 수도 있음.

## (2) 처분의 변경 문제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보호위탁된 피해아동이 자해를 하는 등의 문제로 위탁받은 아동복지시설에서 계속 보호위탁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적극적인 변경 청구(아동학대처벌법 제50조 제2항)가 필요함.

→ 예를 들어 피해아동이 자해 등의 문제를 일으켰던 경우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제4호)에서 국립서울병원(제5호)으로 처분을 변경한 경우가 있음(국립서울병원에서도 현재는 ‘법원의 처분에 의한 입원’이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보호자 동의를 대체하는 것으로 업무 협조가 되고 있음).

## 다. 피해아동의 비행·일탈 행동에 대한 대처

피해아동 중에서는 피해아동 스스로 상당한 비행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때때로 보호위탁된 아동복지시설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현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소년법에는 통고제도(소



년법 제4조 제3항)라는 절차가 있으므로, 비행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자체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는 경우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통해 법원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음.

→ 소년법상 통고제도에 의하면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통고를 할 수 있고, 반드시 범법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출한다든지, 술을 마시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각목) 대상 소년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임

→ 다만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소년법 제4조 제3항), 만일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면 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명의로 신청할 수 있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보호위탁 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통해 통고처분을 신청해야 함.

→ 소년법에 의하여 통고처분이 접수되면 소년재판 담당판사가 해당 소년에 대하여 분류심사원 위탁, 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담교육 등을 명해서 필요한 교육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고, 대부분 가정법원에서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판사가 소년재판도 함께 담당하므로 아동보호사건과 통일성 있는 처리도 가능함.

### 3.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부탁말씀

#### 가. 아동보호전문기관

(1) 적극적인 법원과의 의사소통 노력이 필요

- 정확한 상황과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 행위자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처분 이행에 대한 피드백

(2) 믿고 맡길 수 있는 보호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행위자 : 상담 및 교육
- 피해아동 : 안전한 보호, 심리상담 등 치료, 교육

#### 나. 수사기관 단계부터 시작하는 상담 및 교육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위탁 임시조치 적극 활용

다. 법원은 업무담당자 교육 강화 노력



#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 방안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강 동 옥

2012년 학대피해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라 한다)과 동법의 제정에 따라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2014년 9월 29일)된 지도 1년이 지났다.<sup>16)</sup> 이러한 시점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대책으로 마련된 새로운 법적 체계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갖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예방과 재발방지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학술세미나의 주제발표에서 현장에서 아동학대사건을 직접 다루고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화정관장님께서 지난 11개월간의 아동학대처리 관련 실제 통계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를 제공하고, 실무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유용한 제안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관님의 분석과 제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의 토론주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16) 최근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제13259호, 2015.3.27. 개정, 2015.9.28. 시행)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i) 보호자등의 책무로서 보호자에게 아동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선인적 규정을 신설하고(제53조제2항), (ii)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분조회 등 조치 범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발급을 포함(제22조의2)시키는 한편, (iii)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임을 고지할 수 있고,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제26조 제3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제26조 제4항), 미이행시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제75조 제3항 제1의2호).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9조 제4의2호).

## 1.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정의 의의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제정에 의하여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아동학대범죄’로 명명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아동훈육으로서 용인될 수 없으며, 범죄로서 취급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따라서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에 의한 조기개입을 통해 피해아동의 보호에 보다 진전된 체계를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sup>17)</sup> 하지만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면서도, 아동학대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위주가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피해자변호사제도의 도입 등,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장치를 다수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 가.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아동학대보호사건으로의 우선 처리 명문화

#### \* 현황 :

(1)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과개선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제26조 제5호).

17) 그 문제점에 대하여는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6, 159-190면 참조

(2)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시행 이후 사법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체 사례 대비 1/4을 초과한 26.8%를 차지하는 등, 사법처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본문 <표 2-14> 참조).

#### \* 개선안

(1) 아동학대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게 되면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분리가 수반되고, 따라서 원가정보호가 어렵게 됨. 따라서 가급적 가족기능강화를 통한 원가정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절차로의 진행은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따라서 아동학대범죄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하되, 예외적으로 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하거나 상습범 등의 경우에 한하여 학대행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관련규정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나.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서 피해아동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사 반영 제도화

##### \* 현황 :

(1) 임시조치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제14조 제2항) 한편, 임시후견인 선임에 있어서 피해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피해아동, 변호사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제23조 제2항).

(2)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청구나 법원이 학대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반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개선안 :**

(1) 피해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사건의 모든 처리절차에 있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필요적으로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가급적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접근을 통해 상대적으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고,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이나 비형사처분 조차도 간접적으로 피해아동에 영향을 미쳐 중전의 학대행위보다 더 큰 2차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음.<sup>18)</sup> 피해아동은 피해당사자이며, 아동학대 사건 처리절차의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점에서 모든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이들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다만, 피해아동은 나이가 어리고, 학대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들의 의견은 단지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임<sup>19)</sup>.

**다.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필요적 피해자변호사제도의 도입 및 피해자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필요**

**\* 현황 :**

(1)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 부조를 위하여 피해자변호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제16조). 피해자변호사 및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sup>20)</sup>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부조를 통해 2차

18) 강동욱,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 법학논총 제21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467면.

19) 강동욱, “한국에 있어서 아동학대범죄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26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8, 225면

20) 현재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대상은 (i)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ii)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iii) 성폭력특별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iv) 피해자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5조,

피해를 방지하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권리실현을 위한 제도로써 평가되고 있음.

(2) 2015년 8월 기준(법무부 자료 참조)으로 아동학대범죄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활용정도를 보면, 전체 912건 접수 중 911건에서 피해자변호사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경찰이 신청한 경우가 512건(511건 선정), 윈스톱센터에서 신청한 경우가 360건, 상담소가 신청한 경우가 8건, 검사가 신청한 경우가 32건으로 나타남. 따라서 지난 11개월간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조사 사례건수 1,164건 중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것은 911건이었다고 하면 피해자변호사제도의 활용율은 매우 높다고 평가됨. 즉, 아동학대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신청만 하면 대부분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개선안 :**

(1) 피해아동은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능력이 불과하므로 모든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적 피해자변호사제도로 제도화하고, 피해아동의 개인적 사정에 관계없이 사선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에서 법률적 부조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법률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변호사의 유기적 협조 속에 피해아동의 법적 권리구제 및 2차 피해방지에 노력하도록 유기적인 협조하에 아동학대사건을 처리하는 체제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제6조 또는 그 미수범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30호) 제8조 제2항 본문).

## 라.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속결정의 법제화

### \* 현황 :

(1)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지난 11월간 총 213건 청구 중 93.4%인 199건에 대해 임시보호 인정(본문 <표 2-10> 참조). 임시보호명령은 총 180건 중 128건으로 71.1% 결정(본문 <표 2-11> 참조)

(2)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가 매우 효과적인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시 제출서류가 많고, 결정되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폐단이 지적되고 있음(본문 14면).

### \* 개선안 :

(1)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시한(‘청구한 때로부터 24시간 또는 48시간 이내’ 또는 ‘청구한 날의 익일까지’)로 법정하여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sup>21)</sup>

(2) 임시보호명령의 경우에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필요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3)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 처벌을 위한 것은 아니므로 신청서의 양식을 단순화하고, 제출서류를 줄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서류작성 및 준비에 불필요한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필요적 피해자변호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률전문가인 피해자변호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21) 강동욱, 앞의 논문(소년보호연구), 233면.



## 마.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강화

### \* 현황 :

(1)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사례 중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초기 분리보호건수는 30%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피해아동의 70%가 분리되지 않은 채 원가정보호 상태에 두어지고 있음(본문 11면).

(2)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시행 이후 학대행위자는 물론,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약 2.8배, 이들의 부모와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약 3.6배,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는 약 3.5배 증가함(본문 <표 2-15>).

### \* 개선안 :

(1)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해서는 피해회복과 학대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소정의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상담의 의무적 실시 필요가 필요함. 다만, 피해아동에 대해 교육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함.

(2) 학대행위자로 인정된 경우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의한 일정기간 치료·상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장래적으로 학대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

## 3.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가.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의 확충 및 아동학대사건 처리 절차과정에서 피해아동의 필요적 의료검진제도 및 심리치료 병행

### \* 현황 :

(1)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범경찰

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아동복지법 제27조의3).

(2) 「아동복지법」에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하여 “약물 및 알콜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제15조 제1항 제5호)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가 없으면 피해아동이 일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강구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실제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피해아동에 대해서 이러한 보호조치가 행하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함.<sup>22)</sup>

(3)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중 의료기관 인도(제4호)는 경찰의 경우는 총 328건 중 42건으로 8.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경우는 총 543건 중 56건으로 8.5%에 지나지 않음(본문 <표 2-6> 참조)

#### \* 개선안 :

(1) 학대받은 아동은 대부분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됨. 따라서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가 중요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도 비용부족으로 인하여 주로 신체적 피해의 치료에 집중되어 있고, 심리적 치료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피해아동은 학대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 이상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되므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 경우 무조건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적 검진과 심리적·정서적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sup>23)</sup>

22) 문영희,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법학논총 제38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69면

23) 문영희, 앞의 논문(법학논총), 169면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치료비 부족 등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현행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거나, 제도적으로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3) 피해아동의 경우 일반 의학적 치료와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피해아동 전문치료기관의 지정 또는 피해아동 전문의료인 양성을 제도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확장과 시설점검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 시설의 다양화**

##### **\* 현황 :**

(1) 피해아동에 대한 전체 분리보호 중 대다수가(아동복지법의 경우 56.0%,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응급조치 중 88.7%(본문 <표 2-13> 참조) 시설 보호임.

(2) 피해아동보호 시설의 경우(청소년 쉼터나 그룹홈 등) 시설의 부족과 낙후 및 피해아동의 관리소홀로 인해 피해아동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 **\* 개선안 :**

(1) 보호시설에서 원가정보호에 준하는 정도의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그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감독관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피해아동에 회복과 2차 피해방지가 이루어지도록 사후 관리기관 및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시설로서 원가정보호에 준하는 효과달성이 가능하도록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복지법 제15조 제4항)보다는 대리양육(동법

제15조 제1항), 가정위탁보호(동법 제15조 제2호)<sup>24</sup>, 입양(동법 제15조 제3호) 제도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피해아동의 보호조치에는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 대리양육, 가정위탁보호, 입양,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의 입원 또는 입소(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등의 형태가 있는데, 피해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분류체계(분류기관 및 분류기준과 방법 등)를 구축할 것이 요구됨. 특히, 피해아동에게 치료적 접근이 갖추어진 전문적인 전담그룹홈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됨.<sup>25</sup>

(4) 아동보호조치의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련인들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을 통한 상담·지도·지원 체계의 마련이 요구됨.

####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의 피해아동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의 구축

\* **현황** : 피해아동의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의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개선안** : 아동학대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문성을 가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원스톱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피해아동의 보호에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행 원스톱 지원체제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

24) 문영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의 효율화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10, 94-96면 참조.

25) 문영희, 앞의 논문(피해자학연구), 95면 참조

## 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예산확보 방안 마련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제적 기준에 맞는 아동권리보호와 아동학대방지에 대한 정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편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처리 되지 않은 학대의 피해아동에 대해서도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아동복지법」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련규정을 두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치료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sup>26)</sup>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6) 문영희, 앞의 논문(법학논총), 170면.



# MEMO

# MEMO



# MEMO

# MEMO

2015년 아동학대예방포럼  
**한국의 아동정책, 아동의 미래를 꿈꾸다**

---

인 쇄	2015년 10월 14일
발 행	2015년 10월 14일
발행인	남인순·정진엽·강신명
발행처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부·경찰청
편집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

---